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회)	

국가재정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정규모 증가로 인한 재정업무의 복잡화 및 고도화로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교육의 역할이 더욱 커짐에 따라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령상의 재정교육 관련 규정(제52조)을 보완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정교육의 체계적인 운영, 교육 운영의 전문성 강화, 교육 인식제고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및 구체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해당없음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중 “예산, 결산 등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를 “법 제 101조에 따라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하 “재정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재정교육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한다.

같은조 제2항 중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외부교육기관 등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같은조 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재정정보원
2.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5. 그 밖에 교육운영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같은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5항 중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의 교육”을 “재정교육”으로 한다

같은조에 제3항부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의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이 해당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이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제52조(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u>예산, 결산 등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u>	① ----- <u>법 제 101조에 따라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하 “재정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재정교육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u>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 <u>공무원 인재개발법</u> 」 제3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외부교육기관 등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 <u>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u> 1. <u>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재정정보원</u> 2. <u>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u> 3. 「 <u>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u> 」에 따라 설립된 <u>한국개발연구원</u> 4. 「 <u>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u> 」에 따라 설립된 <u>한국조세재정연구원</u>

<신 설> <신 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밖에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그 밖에 교육운영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의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이 해당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이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 ----- 재정교육-----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재정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5494